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근거 마련 등 〉
■ 이용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65호)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사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3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용선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5. 7. 31.
3. 회 부 일 : 2025. 8. 1.

II. 제안이유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통해 특수자료로 분류하여 매우 폐쇄적으로 관리해 왔음. 그러나 북한자료에 대한 학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일반국민들도 다양한 북한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남북 통합에 기여하고 민간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통일부가 특수자료를 총괄관리하고,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넓히고, 남북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 다. 북한자료 취급기관의 장은 북한자료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북한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분류한 후 그 목록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취급기관의 장은 고유업무 및 학술조사 등의 수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통일부장관은 북한자료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을 두도록 함(안 제10조).

IV. 검토의견

1. 총괄검토

가. 현황 및 입법 필요성

□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한 자료는 「국가보안법」 제7조¹⁾상 찬양·고무를 목적으로 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 즉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관리되어 왔음.

「국가정보원법」 제4조²⁾ 및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제4조제6호 및 제5조³⁾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지

1)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중간 생략)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제4조(기획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기획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중간 생략)

6.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본지침 수립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침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제정하여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중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특수자료⁴⁾로 관리해 왔음.

이에 따라 현재 25개의 감독기관과 180여개의 취급기관이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바탕으로 특수자료 취급규정 또는 취급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는바,

아래 표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인 감독기관은 소속 취급기관을 대상으로 취급 인가·해제와 지도·점검을 비롯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국정원은 특수자료와 관련한 전체 현황을 파악하며 지침과 지도방문을 통해 정보 및 보안업무를 기획·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수자료 업무체계]

취급기관	감독기관	국가정보원
▶ 자체 내규 수립 ▶ 자료보관실 구비 ▶ 인원 보안조치	▶ 취급인가·해제 ▶ 지도방문 ▶ 특별점검 ▶ 행정제재	▶ 지침 제정 및 개정 ▶ 현황 파악 ▶ 합동 지도방문 ▶ 지침 해석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4)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수자료”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CD, 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이하 “디지털 콘텐츠”라 한다)를 포함한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중

가.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

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

2. 제1호의 자료를 복제·복사하거나 그 일부를 발췌·인용 등을 통해 재연한 자료

□ 제정안은 현행 국정원 소관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중심으로 관리되어 온 북한자료(일반자료 및 특수자료)에 대한 관리·분류체계를 개편하여 북한자료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하고, 북한자료 관리총괄을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 현행 지침과 제정안을 비교해볼 때 특수자료 취급관리에 있어 차이는 부분은 다음과 같음.

[현행 지침과 제정안의 주요 차이점]

구분	현행 지침	제정안
특수자료 분류	취급기관의 장 → 감독부처 문의 → 감독부처의 장이 통일부장관 및 국정원장과 협의 → 감독부처 협의체 의뢰	취급기관의 장 → 북한자료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 → (판단 어려울 때) 감독부처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분류 요청 * 통일부장관 매년 북한자료 분류목록 고시 의무
취급기관 인가	감독기관의 장이 인가 후, 국정원장에게 통보	감독기관의 장이 인가 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
취급기관 해제	감독기관의 장이 인가 해제 후, 국정원장에게 통보	감독기관의 장이 인가 해제 후, 통일부장관 및 국정원장에게 보고
특수자료 공개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 후, 국정원장에게 통보	특수자료 공개 시, 북한자료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공개기준에 따라 공개
자료 열람·대출·복사·양도	관련 절차 명시	북한자료의 공개(제9조)에 포함,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기타 통보 (특수자료 취급인가 현황, 특수자료 취급현황, 특수자료 분실·유출 등)	국정원장에게 통보	통일부장관 및 국정원장에게 통보

□ 제정안은 그동안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폐쇄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북한자료의 이용 및 공개 등을 법률로써 규율하려는 것인 만큼 북한자료, 특히 특수자료의 관리 범위 및 공개, 타부처와의 협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제정안에 대하여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북한 연구 확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북한자료의 관리·이용 체계 확립, 국민의 균형된 통일·북한관 확립과 정책 참여 역량 제고 등의 측면에서 입법에 적극 동의함.

즉, 학계 및 일반국민들이 다양한 북한자료를 접할 수 있게 한다는 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북한자료(특수자료) 수집·관리 및 활용 등을 통일부가 주무부처로 총괄하면서,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조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국정원은 북한자료, 특히 특수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특수자료의 범위를 보완하는 한편, 공개 등에서의 국정원의 역할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나. 제정안의 조문 구성

□ 제정안은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넓히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북한자료심의위원회),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북한자료의 분류), 제7조(특수자료의 취급기관의 인가 등), 제8조(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 해제), 제9조(북한자료의 공개 등), 제10조(국립평화통일자료원 설치 등), 제14조(지도·감독), 제15조(통보의무),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8조(벌칙) 등의 총 18개 조문의 본칙과 시행일 및 경과조치 등 3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 조문 구성]

구분	제정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북한자료심의위원회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	북한자료의 분류
제7조	특수자료의 취급기관의 인가 등
제8조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 해제
제9조	북한자료의 공개 등
제10조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설치 등
제11조	북한자료 연구·조사·연계 지원
제12조	전문인력 양성 등

구분	제정안
제13조	국회보고
제14조	지도·감독
제15조	통보의무
제16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17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18조	벌칙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특수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특수자료 취급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2. 주요 조문별 검토

1) 목적(안 제1조) 및 정의(안 제2조)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넓히고, 남북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자료”란 북한이 단독 또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함께 제작·발행한 문서, 도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자료(복제·복사하거나 발췌·인용 등을 통하여 재연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특수자료”란 북한자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6조에 따라 분류된 자료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나. 북한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폭력·파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자료를 북한 내외에서 복제·복사하거나 발췌·인용 등을 통하여 재연한 자료 3. “일반자료”란 특수자료를 제외한 북한자료를 말한다. 4. “취급기관”이란 북한자료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5. “감독기관”이란 취급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이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넓히고, 남북통합에 기여하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북한자료’, ‘특수자료’, ‘일

반자료’와 ‘취급기관’ 및 ‘감독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특수자료의 정의와 관련하여 현행지침과 비교해볼 때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음.

[특수자료 정의 관련 현행 지침과 제정안의 차이점]

현행 지침	제정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수자료”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CD, 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이하 “디지털 콘텐츠”라 한다)를 포함한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중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자료”란 북한이 단독 또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함께 제작·발행한 문서, 도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자료(복제·복사하거나 발췌·인용 등을 통하여 재연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특수자료”란 북한자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6조에 따라 분류된 자료를 말한다.
가.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	나. 북한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폭력·파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	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제1호의 자료를 복제·복사하거나 그 일부를 발췌·인용 등을 통해 재연한 자료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자료를 북한 내외에서 복제·복사하거나 발췌·인용 등을 통해 재연한 자료

특수자료의 범위에 대해 ① 제정안이 전자문서 등의 북한자료도 특수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하는데 비해, 현행 지침은 특수자료에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제정안이 폭력·파괴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내용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특수자료로 보는데 반해, 현행 지침은 구성원 등의 모든 활동에 대해 찬양·고무하는 내용 및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를 특수자료를 정의하고 있어, 현행 지침이 제정안에 비해 특수자료의 범위를 넓게 규율하는 측면이 있음.

□ 한편, 제정안의 북한자료의 정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 제작·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자료, 즉 외국기관·단체가 단독으로 제작·발행한 자료는 북한자료에서 제외되는지, 북한과 외국 개인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제작·발행한 자료가 북한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등의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바,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국정원은 안 제2조제1호 북한자료에 ‘반국가단체’ 자료도 포함하고, ‘폭력·파괴’ 문구 및 명백성 요건을 삭제하며, ‘찬양·고무·선전’ 외에 ‘동조’를 추가하고, 국가변란 또는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도 추가하여 국정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침상 특수자료의 정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동조’와 관련하여 북한의 대남 인지전에 대해 사법적 수단 이외에 행정적 수단으로서도 방어 장치가 필요하여 동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국정원과 협의하여 ‘폭력·파괴’ 문구 및 명백성 요건은 삭제하지 않기로 하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나, 나머지 사항은 협의 중이라고 설명함.

또한, 국정원은 취급기관의 정의와 관련하여 ‘수집·보유’를 ‘보유·이용·취급’으로 변경하고, 법안 전체에서 ‘수집’ 문구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국정원과 협의하여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고 ‘수집’ 문구는 변경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설명함.

2)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제 정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정안은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제정안(이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다른 국가기관 또는 군 일부 기능이 수행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예외를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제정안은 ‘북한자료의 수집’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수집’에 대하여 북한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안 제4조제2항제1호),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안 제5조제1항제1호)으로 언급하는 외에는 별도의 관련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바, 그 규정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수사기관 및 군 등에서 국가안보 관련 목적으로 보유·이용·관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정안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조제목을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적용범위’로 수정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 기관의 자료에 대한 적용 배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정보기관, 수사기관 등

에 대한 적용 제외 조항을 신설(제3조제2항)⁵⁾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고 설명함.

3) 북한자료심의위원회 (안 제4조)

제정안
제4조(북한자료심의위원회) ①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북한자료의 분류 기준 및 재분류에 관한 사항 3. 특수자료의 공개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1급 상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5) 통일부와 국정원의 협의안

제정안	수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3조(적용범위) ①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u>국가안전보장에</u>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u>국가안전보장과</u>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관리 및 이용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정 안

2. 북한 및 통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⑨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4조는 북한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고, 심의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두는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북한자료심의위원회는 현행 지침의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대체하는 것으로, 지침상 협의체와 제정안의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와 북한자료심의위원회 차이점]

구분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	북한자료심의위원회
근거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2조의2	제정안 제4조
소속	국가정보원	통일부
위원장	국정원장	통일부 차관
위원 구성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되 필요시 여타 감독부처들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 북한 및 통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심의내용	- 특수자료 취급기관이 자체 판단하기 어려운 자료들의 특수자료 분류여부 결정 - 기타 특수자료 분류·관리체계 개선방안 논의 등	-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북한자료의 분류 기준 및 재분류에 관한 사항 - 특수자료의 공개 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기타		- 간사, 임기, 의결요건,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 지침은 관련 참여부처를 열거하고 있는 반면, 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특수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주요기관이 참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정안은 위원의 임기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가장 큰 변화는 그 소속과 위원장이 통일부와 통일부 차관으로 변경하는 것임.

□ 제정안의 내용 중 안 제5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7조의 특수자

료 취급기관의 인가 및 그 해제의 기준, 그리고 특수자료 취급기관의 인가 및 그 해제 등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므로,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참고로, 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외교부는 안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안건 상정 및 위원 위촉 사항을 추가하고, 안건 상정권을 위원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인 위원으로 확대하며, 안 제4조제2항제2호 민간위원 선정 시 ‘관계부처·기관 협의’를 거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4) 기본계획 수립 등 (안 제5조)

제정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북한자료의 수집·관리·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2. 북한자료 분류체계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에 관한 사항 4. 북한자료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북한자료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 정 안

③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5조는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수립·관리·이용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기본방향, 분류체계의 수립·운영, 대국민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통일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이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 등이 특정분야, 즉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해 수행하여야 하는 책무 및 정책 등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책무 및 정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독려할 수 있고, 기본계획을 통해 국민의 이해도 제고 및 투명성 확보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됨.
- 다만, 제정안은 기본계획을 통일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한다고만 규정하여, 이를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특정분야에서 기본계획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5년으로 비교적 장기에 해당하는바, 그 기간 동안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본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 그리고 매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만으로 계획수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한편,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안은 다양한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가 관여되어 있고, 국민의 알권리 및 국가안전 보장 등의 복합적 요소를 포괄하는바, 그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 기본계획에 대한 지속적 점검의 필요성이 있고, 이를 통해 계획의 체계성, 성과의 달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경우 그 수정 및 개선의 계기가 되고, 아울러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기본계획 수립 후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⁶⁾

6) 제정안 제5조와 관련된 국회 보고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의미하고, 안 제13조 보고의무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국회나 상급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입법·재정·국정통제 등 헌법상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국회 본회의 보고사항을 의미함.

< 정책계획 등에 대한 국회 보고 입법례 >

법률명	조문
-----	----

□ 참고로, 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부는 안 제5조는 5년 단위 기본계획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외교부는 안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안 제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2.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북한인권법	제6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8.(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북한자료의 분류(안 제6조)

제정안
제6조(북한자료의 분류) ① 취급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제2호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북한자료를 일반자료와 특수자료로 분류하고, 그 목록을 감독기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자료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북한자료의 분류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소관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목록이 제4조제2항제2호의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급기관의 장에게 자료 재분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목록에 대한 재분류 의견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목록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북한자료의 분류 및 재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6조는 북한자료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분류기준에 따라 북한자료 분류 후 그 목록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목록이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분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제출받은 북한자료 목록을 매년 고시하도록 하여 통일부가 북한자료에 대한 전체 현황을 파악 및 관리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취급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취급기관의 장이 북한자료를 분류할 때 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분류를 요청할 수 있고, 국가정보원장이 특수자료 목록에 대한 재분류 의견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지침에서도 특수자료로 분류한 경우 목록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통보’를 ‘제출’로 용어를 변경함과 아울러, 통일부장관이 제출받은 목록을 검토하여 분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자료의 재분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제출받은 목록에 대한 재분류 의견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그런데, 제정안은 ‘취급기관의 장이 제4조제2항제2호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북한자료를 일반자료와 특수자료로 분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분류기준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의 하나에 그치며 위원회의 지위도 심의위원회에 불과하여 분류기준의 수립·운영 주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통일부장관이 북한자료 분류기준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또한, 제정안은 취급기관의 장이 북한자료의 분류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소관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분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요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이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현행 지침은 특수자료 분류시 취급기관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문의할 시, 해당 감독부처의 장은 통일부장관 및 국정원장과 협의를 거칠 수 있고, 이렇게 하여도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에 특수자료 해당 여부 판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침에 따른 절차를 참고하여 동 요청에 따른 대응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안 제6조제5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안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자료로 제출받은 목록에 대한 재분류 의견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특수자료의 일반자료로의 재분류’ 의견만 제출할 수 있고, ‘일반자료의 특수자료로의 재분류’ 의견의 제출은 그 목록이 없어 제약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국정원은 일반자료·특수자료 목록을 모두 통일부장관 및 국정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6조제5항에 대하여 북한자료 분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제출받은 목록을 일반자료와 특수자료로 분류 또는 재분류하여 매년 고시하도록 수정하고, 국정원장이 고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⁷⁾하였다고

설명함.

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외교부는 통일부가 취합한 북한자료 분류 목록을 감독기관이 공유하도록 ‘감독·취급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에 목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통일부는 북한자료 목록을 매년 고시하기 때문에 감독기관 등에 별도 목록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임.

7) 통일부와 국정원의 협의안

제정안	수정안
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목록에 대한 <u>재분류 의견을</u>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목록을 <u>매년 고시하여야 한다.</u> ⑦ 그 밖에 북한자료의 분류 및 재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특수자료 취급기관의 인가 등) ⑤ 통일부장관은 특수자료의 보안·관리 및 취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목록과 <u>제5항에 따른 고시에 대한 의견을</u>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목록을 <u>일반자료와 특수자료로 분류 또는 재분류하여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u> (제정안 7항과 같음) 제7조(특수자료 취급기관의 인가 등) ⑤ 통일부장관은 <u>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u> 특수자료의 보안·관리 및 취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특수자료의 취급기관 인가 등(안 제7조 및 제8조)

제정안
제7조(특수자료 취급기관의 인가 등) ① 특수자료를 취급하려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감독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취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없다. 1. 해당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 2. 학술조사 및 연구 수행 3. 다른 취급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대행 및 제공 4. 그 밖에 특수자료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특수자료의 취급 목적, 분류의 적정성 및 보안대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특수자료 취급을 인가한 때에는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특수자료의 보안·관리 및 취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특수자료의 인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 해제) ① 감독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취급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의 목적이 상실되거나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 2.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중대한 보안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여 인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② 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가가 해제된 경우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 관리대책을 소관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관 감독기관의 장은 취급기관이 보유한 특수자료의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인가를 해제하여야 하며, 인가 해제 사실을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취급기관 인가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북한자료의 총괄관리 주무부처를 통일부로 변경하면서, 특수자료를 취급하려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감독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신청하도록 하되, 취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 등의 목적 외에는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특수자료의 취급을 인가한 때에는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며, 현재 국정원이 작성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통일부장관이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첫째, ‘특수자료의 취급’이라는 표현을 안 제7조 내의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데,⁸⁾ ‘취급’의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취급’이 ‘수집·보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집·보유’ 활동에 더하여 그 외의 활동을 포함하는 보다 확대된 활동 또는 작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둘째, 안 제7조의 ‘인가’가 해당 기관이 특수자료의 취급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인가하는 것인지, 개별적 자료를 특수자료로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가 제정안의 규정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구체적 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봄.

8) 안 제7조제1항, 제2항, 자3항, 제4항, 제5항

- 셋째, 감독기관의 장은 특수자료의 인가 또는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그 기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실정에서 단순히 취급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인가하도록 하고 있는 점, 통일부장관이 특수자료의 보안·관리 및 취급에 관한 지침을 관계 기관(국정원장 등)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작성하고, 동 지침을 감독기관에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참고로, 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외교부는 안 제7조제5항 특수자료 보안·관리 및 취급에 관한 지침 작성 시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한편, 제정안 제8조는 인가 해제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장이 인가를 받은 취급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인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 등의 목적이 상실되거나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 또는 중대한 보안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인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지침은 이외에도 일정 기간 자료 활용 실적이 없거나 감독부처로부터 경고·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필요적 해제로 규정하여 차이가 있는바, 현행 지침과 비교하여 해제사유를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즉, 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직권에 의한 인가 해제와 별도로 신청에 의한 인가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직권에 의한 인가 해제의 사유와 신청에 의한 인가 해제 사유를 보다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본문·단서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전단·후단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7) 북한자료의 공개(안 제9조)

제정안
제9조(북한자료의 공개 등) ① 취급기관의 장은 학술조사·연구 및 북한에 대한 이해 등에 필요한 경우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를 공개할 경우 제4조제2항제3호의 공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취급기관의 장이 제1항의 북한자료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북한자료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북한자료 공개와 관련하여 취급기관의 장이 학술조사·연구 및 북한에 대한 이해 등에 필요한 경우 일반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자료를 공개한 경우 제4조제2항제3호의 공개기준

을 준수하도록 하되, 통일부장관은 취급기관이 북한자료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9조제2항은 ‘제4조제2항제3호의 공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4조제2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위원회도 그 지위가 심의위원회에 그치고 있어 공개기준의 수립·운영주체라고 보기 어려운바, 통일부장관이 특수자료 공개기준을 관계 기관(국정원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취급기관이 임의적으로 특수자료를 공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바, 현행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소한의 수준에서의 관리수단으로서 감독기관의 승인절차를 두는 방안 등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한편, 제정안은 북한자료의 공개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지침에는 공개활용 외에 자료의 열람·대출·복사·양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신분 및 목적 확인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자료의 열람·대출·복사·양도는 국민의 알권리 및 국가안전보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참고로, 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부는 북한자료에 대한 대국민 공개 확대를 위한 입법취지에 맞게 관련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8)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설치 등(안 제10조)

제정안
제10조(국립평화통일자료원 설치 등) ① 북한자료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이하 “자료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북한자료 분류 및 재분류에 관한 사항 3. 북한자료 종합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취급기관 등의 연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북한자료를 이용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북한자료 연구·조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자료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0조는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통일부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북한자료센터의 업무와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제정안에 따른 국립평화통일자료원과 기존 북한자료센터 업무 비교]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주요 업무		북한자료센터
1호	북한자료 수집·관리 및 이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통일부 보유자료에 한정, 특수자료취급지침에 따라 시행
2호	북한자료 분류 및 재분류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 추진중
3호	종합정보망 구축	
4호	취급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제한적 운영
5호	북한자료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제한적 운영
6호	북한자료 연구·조사 등의 지원	-
7호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특수자료취급지침에 따른 운영

자료: 통일부

- 이와 같은 제정안의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제정안에 의해 북한자료와 관련한 통일부의 역할이 보다 커지는 경우에 있어서 기존 북한자료센터의 규모와 예산을 확장하여 기능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북한자료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임.

9) 지도·감독(안 제14조)

제 정 안
제14조(지도·감독) ① 통일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은 각 소관 취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취급기관의 장은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취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통일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이 취급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현행 지침은 감독부처의 장이 취급기관을 지도 방문 및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전년도에 시정명령 등을 받은 취급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및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취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면서 지침 또는 기준 등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현행 지침 운영상 부과하고 있는 것과 같은 행정제재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이는 대통령령에 규정할 수 있는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벗어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반드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
- 참고로, 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국정원은 안 제14조제1항에서 ‘명령’을 ‘요청’으로 수정하고, 특수자료의 관리·이용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명령’을 ‘요청’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지도·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⁹⁾한다는 의견임.

9) 통일부와 국정원의 협의안

제정안	수정안
②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취급기관의 장은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외교부는 지도·감독 권한을 감독기관 장에 한정(통일부장관 제외)하고 통일부장관의 지도·감독 규정에 대해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10) 비밀유지의 의무(안 제16조) 및 벌칙(안 제18조) 등

제정안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북한자료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통일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 제15조는 북한자료 관련 직무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17조는 업무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근거를 규정하며, 안 제18조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 북한자료 중 특히 특수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측면이 강화되므로 비밀유지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은 유사 입법례¹⁰⁾들을 참고할 때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서 위원회의 위원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등의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지만,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해 보임.

1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하 생략)

제34조(벌칙) 제32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비밀유지 의무) ①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참고자료

구분

주요내용

기관현황

특수자료 취급기관 현황

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등 총 25개 감독부처(감독기관), 180개 산하기관(취급기관) 운영

* △교육부(대학 도서관·국사편찬위 등 53개) △문체부(국립중앙도서관 등 36개) △통일부(통일관 등 24개) △방통위(KBS 등 12개) △국무조정실(국책연구원 등 12개) △국방부(정보사 등 11개) △과기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6개) △외교부(세종연구소 등 3개) △국가보훈부(독립기념관 등 3개) △법무부(통일법무과 등 2개) △국토부(LH 등 2개) △금융위(산업은행 등 2개) △기재부(한국은행 등 2개) △산업부(한국광해광업공단) △행안부(국가기록원)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국가인권위(인권위 자료실) △국가유산청(국립문화재연구원)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센터) △농촌진흥청(농업과학도서관) △기상청(국제협력담당관) △대법원(사법정책연구관실) △국회(국회도서관) △민주평통(사무처)

자료현황

북한자료 현황

(전국 특수자료 현황) △단행본 103,310건 △연속간행물 34,704건 △비도서 185,663건 등 총 323,677건임
(‘22년 조사 당시 15개부처, 102개 기관만 참여)

* 북한자료센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일부기관을 제외, 북한자료를 대부분 ‘특수자료’로 분류

북한자료센터 자료 현황

(북한자료 현황) 특수 7 : 일반 3

구분	일반	특수	총계
단행본	7,785	17,978	25,763
정기간행물	1,798	3,540	5,338
비도서	3,715	10,805	14,520
합계	13,298	32,323	45,621
소장 비율	29.15%	70.85%	100%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현황) 특수 9 : 일반 1

구분		일반	특수	총계	기사색인(건)
북한자료 (아카이브 시스템)	신문(호)	0	59,963(23종)	59,963(23종)	1,792,813건
	잡지(호)	4,400(55종)	13,822(200종)	18,222(255종)	570,930건
	단행본(권)	1,408	5,288	6,696	
	영상자료(편)	0	4,233	4,233	
	소계	5,808	83,306	89,114	2,363,743건
국내자료	통일부 발간물	4,643	0	4,643	
총계		10,451	83,306	93,757	2,363,743건
소장 비율		11.15%	88.85%	100%	

자료:통일부

문 의 처

02)6788-5264